13장공련 명부 제1호

2001년 3월 30일

일본화장품공업연합회 산하회원 각위

일본화장품공업연합회

전성분표시명칭위원장

하마구치 마사토시

“화장품의 성분표시 명칭 리스트”에 대해

귀하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한편, 화장품의 규제 완화와 관련된 약사법 시행규칙 등의 개정이 드디어 2001년 4월부터 시작합니다.

화장품 전성분 표시의 표시방법 등에 대해서는 2001년 3월 6일자 의약심발 제163호•의약감마발 제220호 후생노동성 과장 통지에 의해, 성분의 명칭은 일본화장품공업연합회가 작성한 “화장품의 성분표시 명칭 리스트”를 이용하도록 명기되면서, 리스트의 포지션이 명확하여 졌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2007년 4월 30일에 “화장품의 성분표시 명칭 리스트(안) (No.1)”을 공표한 것을 시작으로, 매번 성분표시 명칭 리스트를 작성해 왔는데, 오늘부로 No.9의 리스트를 공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를 계기로 지금까지 반영하지 못했던 여러 사항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대응하였으므로 아울러 연락 말씀드립니다.

산하회원 각 사에서는 소비자의 상품선택을 쉽게 하고, 또한 소비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도 화장품의 전성분 표시에서는 “화장품의 성분표시명칭 리스트”를 활용해 주시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

아래

1. 2001년 3월 30일자로 화장품 성분표시 명칭리스트(안) No.3에서 No.8까지 “(안)”을 삭제하고 운용합니다. 더불어, No.1 및 No.2에 대해서는 개정판을 작성했으므로, 그 단계에서 “(안)”을 삭제했습니다.

2. “화장품 성분표시 명칭리스트(No.1 및 No.2 개정판)”를 작성했습니다. 개정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장품 성분표시 명칭 리스트(안) No. 1 및 No. 2에 수재된 표시명칭에 대해서 명확한 정의를 내린 것.

(2) 83종의 법정 색소에 대해서는 표시명칭과 표시별 명칭을 바꾼 것.

(3) 화장품 성분표시 명칭리스트(안) No.1 및 No. 2 수재 식물유래 성분에 대해서는 INCI 명과의 무결성을 도모하기 위해, 표시명칭을 일부 추가•변경한 것.

(4) 화장품 종별 허가기준 폐지에 따라, 지금까지의 규격이라는 개념이 없어지기 때문에, 기준에 관한 부분(종별허가성분명칭, 성분코드 포함)은 어디까지나 참고로 한 것.

이상

동봉자료: 화장품의 성분표시 명칭리스트(No.1 및 No.2 개정판)  
화장품의 성분표시 명칭리스트(No.9)